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4. 17

다. 상 정 일 자 : 2001. 4. 17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도시경제과장 최 성 기

나. 제정사유

- o 길 좋고 경제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o 지원범위는 가스 분관 설치비를 말한다.
- o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조금액, 교부방법, 자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
- o 보조금의 교부 방법으로는 선급 또는 실적급으로 지급함.
- o 감독은 소속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검사하게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o 화순군의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기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가스 분관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 제정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검토 보고 됨.

4. 질의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론요지 : “ 생 략 ”

6. 심사결과 :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금에 관한 조례안